2026 주택관리사 핵심요약집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정오사항_2 (초판기준)

페이지	96p
수정 전	[국민연금법, 보험료 부담]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,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,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**1천분의 45**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
수정 후 **[법령개정]**	[국민연금법, 보험료 부담]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,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,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**1천분의 65**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➠ **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** **1. 2026년은 1만분의 475** **2. 2027년은 1만분의 500** **3. 2028년은 1만분의 525** **4. 2029년은 1만분의 550** **5. 2030년은 1만분의 575** **6. 2031년은 1만분의 600** **7. 2032년은 1만분의 625**
페이지	**189p**
수정 전	[기계환기 설비설치] ②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수정 후 **[법령개정]**	[기계환기 설비설치] ②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 **이 경우 별도의 환기설비가 설치된 욕실·화장실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를 산정할 때 제외할 수 있다.**